

# 대구광역시 달서구청,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3. 12.

기획재경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,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총무과장)
- 발의일자: 2024. 2. 28.(수)
- 회부일자: 2024. 2. 28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(2024. 3. 12.)

## 2. 개정이유

- 준공 예정인 죽전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반영하여 행정업무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죽전동행정복지센터 청사의 소재지를 “와룡로56길 26(죽전동)”로 신설.(안 별표)

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련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및 「대구광역시 달서구청,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행정규제 여부 검토 결과: 해당사항 없음
-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- 부패영향 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 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- 입법예고(2024. 2. 1. ~ 2. 21.)결과: 의견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5월 준공예정인 죽전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반영하여 행정업무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 내용은 죽전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임시청사(구, 죽전중학교)에서 와룡로 56길 26(죽전동)으로 규정하여 신청사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, 신청사 개소를 주민들이 쉽게 행정복지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